남북협력기금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 3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0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재 무 제 표

재 정 상 태 표 4

재 정 운 영 표 6

순 자 산 변 동 표 7

주 석 8

Nexia Samduk 삼덕회계법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남북협력기금
기금수탁관리자 귀하

감사의견

우리는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기금의 재무제표는 기금의 2021년 12월 31일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정운영결과 및 순자산의 내용을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제표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재무제표의 주석 5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금은 북한조선무역은행의 대여금 1,103,154 백만원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여금 1,374,393 백만원에 대해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상기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변동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금(KEDO) 대여금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경제협력사업보험

재무제표의 주석 12 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44조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기금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삼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 명 철

2022년 6월 2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22년 6월 2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기금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 정 상 태 표

제 31 기 2021 년 12 월 31 일 현재
제 30 기 2020 년 12 월 31 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단위: 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자산				
Ⅰ.유동자산		255,471,073,939		400,828,751,689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 3)		85,593,890,517		116,137,161,483
1)국고금	85,593,890,517		116,137,161,483	
2.단기금융상품(주석 3)		-		19,000,000,000
1)정기예금	-		19,000,000,000	
3.단기투자증권(주석 4)		-		2,620,471,723
1)지분증권	-		2,620,471,723	
4.미수채권(주석 6,12)		18,342,499,966		26,190,182,619
1)미수이자수익	18,342,499,966		26,190,182,619	
2)기타의미수금	50,241,968,720		50,252,222,600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50,241,968,720)		(50,252,222,600)	
1)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50,241,968,720)		(50,252,222,600)	
5.단기대여금(주석 5,6)		151,534,683,456		236,880,935,864
1)정부외단기대여금	209,149,828,245		290,613,437,920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57,615,144,789)		(53,732,502,056)	
1)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1,356,880,870)		(3,564,924,670)	
2)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56,258,263,919)		(50,167,577,386)	
Ⅱ.투자자산		2,698,551,039,563		2,447,064,700,617
1.장기대여금(주석 5,6)		2,610,906,377,294		2,445,488,270,226
1)정부외장기대여금	2,618,405,715,691		2,453,099,417,648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7,499,338,397)		(7,611,147,422)	
1)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1,610,000,000)		(1,610,000,000)	
2)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5,889,338,397)		(6,001,147,422)	
2.장기투자증권(주석 4)		87,644,662,269		1,576,430,391
1)지분증권	87,644,662,269		1,576,430,391	
Ⅲ.일반유형자산(주석 7)		66,971,895,111		59,070,938,736
1. 토지		27,051,676,980		18,569,211,130
2. 건물		38,633,562,638		39,145,039,527
1)건물	38,633,562,638		45,982,619,86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6,837,580,333)	

과 목	제 31(당) 기		제 30(전) 기	
3. 구축물		438,151,700		451,346,503
1)구축물	438,151,700		607,700,000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		(156,353,497)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572,033,793		650,123,208
1)사무용기기	833,129,150		760,494,150	
사무용기기감가상각누계액	(465,355,986)		(376,201,045)	
2)사무용집기	85,084,340		85,084,340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61,300,191)		(52,167,125)	
3)운반건설기계및차량	430,105,000		430,105,000	
운반건설기계및차량감가상각누계액	(289,782,610)		(242,915,555)	
4)전기통신기기	78,769,000		74,871,000	
전기통신기기감가상각누계액	(38,614,910)		(29,147,557)	
5. 기타일반유형자산		276,470,000		255,218,368
1)입목	276,470,000		255,218,368	
Ⅳ.기타비유동자산		90,516,468,860		72,311,145,694
1.장기미수채권(주석 6)		90,516,468,860		72,311,145,694
1)장기미수이자수익	90,516,468,860		72,311,145,694	
자 산 총 계		3,111,510,477,473		2,979,275,536,736
부채				
Ⅰ.유동부채		110,904,519,189		244,172,803,355
1.유동성장기차입부채(주석 8)		105,500,000,000		237,000,000,000
1)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105,500,000,000		237,000,000,000	
2.기타유동부채		5,404,519,189		7,172,803,355
1)미지급비용	5,404,519,189		7,172,803,355	
Ⅱ.장기차입부채		2,194,000,000,000		2,062,500,000,000
1.장기차입금(주석 8)		2,194,000,000,000		2,062,500,000,000
1)정부내장기차입금	2,194,000,000,000		2,062,500,000,000	
부 채 총 계		2,304,904,519,189		2,306,672,803,355
순자산				
Ⅰ.적립금및잉여금		789,872,499,992		664,273,798,489
Ⅱ.순자산조정(주석 11)		16,733,458,292		8,328,934,892
순 자 산 계		806,605,958,284		672,602,733,381
부채와 순자산계		3,111,510,477,473		2,979,275,536,73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재 정 운 영 표

제 31 기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제 30 기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과 목	제 31(당) 기			제 30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주석 9)	41,003,326,915	(110,180,425,211)	(69,177,098,296)	135,443,323,508	(46,670,823,350)	88,772,500,158
1.통일정책 프로그램	4,630,863,040	(33,797,210)	4,597,065,830	4,682,561,796	(255,218,368)	4,427,343,428
2.남북사회문화교류 프로그램	3,666,484,621	(134,300,680)	3,532,183,941	4,467,427,809	(316,549,550)	4,150,878,259
3.인도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4,284,944,553	(145,622,290)	4,139,322,263	15,886,723,040	(18,223,276,320)	(2,336,553,280)
4.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28,421,034,701	(109,866,705,031)	(81,445,670,330)	110,406,610,863	(27,875,779,112)	82,530,831,751
Ⅱ.관리운영비			111,058,900			57,802,950
1.경비			111,058,900			57,802,950
(1)외주용역비			111,058,900			57,802,950
Ⅲ.비배분비용			44,305,580,434			52,685,857,368
1.이자비용			44,305,580,434			52,685,857,368
Ⅳ.비배분수익			944,643,541			1,291,556,576
1.이자수익			827,776,361			1,282,719,876
2.자산처분이익			109,729,820			1,018,470
3.기타수익(주 10)			7,137,360			7,818,230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5,705,102,503)			140,224,603,900
Ⅵ.비교환수익등			53,817,599,000			92,535,978,104
1.기타재원조달및이전			53,817,599,000			92,535,978,104
Ⅶ.재정운영결과(Ⅴ-Ⅵ)			(79,522,701,503)			47,688,625,79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 자 산 변 동 표

제 31 기 2021 년 1 월 1 일부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제 30 기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남북협력기금 (단위:원)

과 목	기본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기초순자산(전기초)	-	654,922,424,285	8,241,709,492	663,164,133,777
1.보고금액	-	654,922,424,285	8,241,709,492	663,164,133,777
Ⅱ.재정운영결과	-	47,688,625,796	-	47,688,625,796
Ⅲ.조정항목		57,040,000,000	87,225,400	57,127,225,400
1.투자증권평가손익(주석 4,11)	-	-	87,225,400	87,225,400
2.기타순자산의증감	-	57,040,000,000	-	57,040,000,000
Ⅳ.기말순자산(전기말)(Ⅰ-Ⅱ+Ⅲ)	-	664,273,798,489	8,328,934,892	672,602,733,381
Ⅰ.기초순자산(당기초)	-	664,273,798,489	8,328,934,892	672,602,733,381
1.보고금액	-	664,273,798,489	8,328,934,892	672,602,733,381
Ⅱ.재정운영결과	-	(79,522,701,503)	-	(79,522,701,503)
Ⅲ.조정항목		46,076,000,000	8,404,523,400	54,480,523,400
1.투자증권평가손익(주석 4,11)	-	-	(752,239,845)	(752,239,845)
2. 자산재평가이익(주석 7,11)		-	9,156,763,245	9,156,763,245
3.기타순자산의증감	-	46,076,000,000	-	46,076,000,000
Ⅳ.기말순자산(당기말)(Ⅰ-Ⅱ+Ⅲ)	-	789,872,499,992	16,733,458,292	806,605,958,284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 석

제 3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0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남북협력기금

1. 기금의 개요

남북협력기금(이하“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일 제정공포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대한민국정부가 25,000백만원을 출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기금수탁관리자로 지정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기금의 재무제표는 2009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가회계법 제 11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의 인식

기금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고 있으며,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손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기금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금성자산이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

(3) 장·단기금융상품

기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장·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장단기의 구분은 만기가 재정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 또는 1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4) 유가증권

기금은 유가증권에 대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거나 1년 이내 처분예정인 유가증권은 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후에 처분 예정인 유가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분류의 적정성은 재정상태표일마다 재검토합니다.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투자목적의 장·단기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투자목적이란 투자증권을 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함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상 순자산 조정항목으로 인식합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재정상태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감액손실 금액은 재정운영표상 원가에 반영합니다.

(5) 대여금 등의 평가

기금은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대여금 등의 잔액에 대하여 차주, 보증인, 유가증권 발행인, 보증의뢰인 등 관련 거래처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기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류된 대여금에 대해서 각각 0.85% 이상(일부 업종은 0.9% 이상), 7% 이상, 20% 이상, 50% 이상 및 100%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회수가 예상되는 담보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58조에 따라 남북한 당국간 사업,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및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융자보조원가충당금

기금은 유효이자율(일반적으로 국채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은 융자회계준칙을 적용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의 원금에서 융자금 회수가능가액의 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융자금과 만기가 유사한 국채할인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융자금의 평가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은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조선무역은행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융자금 등에 대해서 차주의 특수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융자

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 일반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합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가산하고, 이 외의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산에 차감하여 표시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및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0 ~ 50년	정액법
구축물	20년	정액법
사무용기기	5 ~ 12년	정액법
사무용집기	8 ~ 11년	정액법
운반건설기계및차량	5 ~ 11년	정액법
전기통신기기	7~11년	정액법

(8) 자산의 감액 등

기금은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그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합니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감액 전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합니다.

(9) 우발상황

기금은 지출의 시기 및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과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0) 외화자산의 환산

기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한 미달러화 기준환율(당기말 ₩1,185.50/USD) 및 재정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산손익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 출연금

기금이 수령하는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은 기금설치 목적을 위해 지출되는 재원의 용도에 따라 달리 회계처리하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또는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의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재원의 용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처리하며,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자산매입, 대여 등)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에 기타순자산의 증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위탁수수료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운용 및 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통일부와 협의된 위탁수수료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급하고 프로그램 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2021년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금융기관
	2021.12.31	2021	2020	
현금및현금성자산 :				
MMDA	실적배당	99	57	하나은행
MMF	실적배당	85,495	114,642	삼성자산운용 외
기타국고금	-	-	1,438	한국은행
		85,594	116,137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	19,000	국민은행 외
		-	19,000	
		85,594	135,137	

4. 장·단기투자증권

2021년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장·단기투자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0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단기투자증권 :						
지분증권	-	-	-	2,500	2,621	2,621
채무증권	-	-	-	-	-	-
	-	-	-	2,500	2,621	2,621
장기투자증권 :						
지분증권	88,200	87,645	87,645	1,500	1,576	1,576
채무증권	-	-	-	-	-	-
	88,200	87,645	87,645	1,500	1,576	1,576
	88,200	87,645	87,645	4,000	4,197	4,197

5. 대여금

(1) 기금은 남북한의 상호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남북간 경제교류사업을 시행하는 남한주민 및 남북 당국간 합의된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한 북한당국 등입니다.

(2) 2021년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융자사업의 규모 및 이자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이자율(%)	금 액	
	2021.12.31	2021	2020
융자금	0.0 ~ 5.9	2,827,556	2,743,713
융자보조원가충당금		(62,148)	(56,169)
대손충당금		(2,967)	(5,175)
		2,762,441	2,682,369

(3) 2021년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 장·단기대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	연이자율(%)	금 액	
		2021.12.31	2021	2020
정부외 단기대여금	실적한도대출	1.0 ~ 3.5	5,043	5,223
	반출자금대출	4.9	75	75
	특별경제협력자금대출	1.0 ~ 3.0	148,884	153,727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0 ~ 5.9	6,562	92,358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46,716	37,515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0.0 ~ 1.0	1,870	1,715
			209,150	290,613
정부외 장기대여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1.0 ~ 5.9	112,714	30,950
	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1.0	28,145	35,330
	경수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0.0	1,374,393	1,374,393
	외화표시민족공동체회복지원자금대출	0.0 ~ 1.0	1,103,154	1,012,427
			2,618,406	2,453,100
			2,827,556	2,743,713

(4)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대출종류별 정부승인금액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대출종류	차주별	정부승인금액	집행금액	회수금액	대출잔액
대북식량차관(2000)	북한조선무역은행	USD 100,000	USD 88,355	-	USD 88,355
대북식량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110,000	106,000	-	106,000
대북식량차관(2004)	북한조선무역은행	124,000	117,986	-	117,986
대북식량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155,000	150,000	-	150,000
대북식량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154,000	151,701	-	151,701
대북자재장비차관(2002)	북한조선무역은행	45,000	42,887	-	42,887
대북자재장비차관(2003)	북한조선무역은행	60,000	68,051	-	68,051
대북자재장비차관(2005)	북한조선무역은행	28,500	21,959	-	21,959
대북경공업원자재차관(2007)	북한조선무역은행	80,000	80,000	2,400	77,60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3,000	13,000	11,423	1,577
		USD 979,500	USD 945,939	USD 13,823	USD 932,116
대북경수로사업 대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3,542,000	1,374,393	-	1,374,39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6,100	22,921	12,228	10,69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97	801	401	40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0,400	9,256	1,851	7,4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15,900	14,309	1,218	13,09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0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8,910	7,444	155	7,28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768	3,703	199	3,50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999	5,973	446	5,52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338	3,338	241	3,09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5,068	4,810	472	4,33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4)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289	3,289	411	2,87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4,165	3,556	449	3,10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6)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3,300	3,200	717	2,483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7)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656	2,656	396	2,26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574	2,574	563	2,01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1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574	2,574	386	2,18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20)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574	2,574	286	2,288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202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302	2,302	-	2,302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한국관광공사 외	384,556	348,875	75,597	273,278
		4,030,370	1,818,548	96,016	1,722,532
		USD 979,500	USD 945,939	USD 13,823	USD 932,116
		4,030,370	1,818,548	96,016	1,722,532

2021년 12월 31일 현재 외화표시 정부외장·단기대여금의 원화환산액은 1,105,024 백만원입니다.

(5) 2021년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정부외 장·단기대여금에 대한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정부외 장·단기대여금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1,103,154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	76,730	2,730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73,279	59,418	2,967
	2,827,556	62,148	2,967

구 분	2020		
	정부외 장·단기대여금	융자보조원가 충당금	대손충당금
대북식량및자재장비등 차관(*)	1,012,427	-	-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1,374,393	-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	74,561	2,807	-
반출입 및 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 (실적한도대출 포함)	282,332	53,362	5,175
	2,743,713	56,169	5,175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은 대북식량 및 자재장비 등 차관 및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2,477,547백만원(전기: 2,386,820백만원)에 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8조 및 제 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1,103,154백만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1,374,393백만원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변동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기금이 당기와 전기 중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운영표에 융자보조비용 및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0
융자보조비용	8,801	21,881
대손상각비	3	-
	8,804	21,881

6. 외화자산

2021년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외화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USD, 백만원)

계정과목	외화종류	2021.12.31		2020.12.31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단기대여금	USD	1,577	1,870	1,577	1,716
장기미수채권	USD	53,381	63,283	53,381	58,078
장기대여금	USD	930,539	1,103,154	930,539	1,012,427
		985,497	1,168,307	985,497	1,072,221

7. 일반유형자산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일반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기 초	취 득	상 각	기타증감(*)	기 말
토 지	18,569	-	-	8,483	27,052
건 물	39,145	-	(1,151)	640	38,634
구 축 물	452	-	(31)	17	438
사무용기기	384	73	(89)	-	368
사무용집기	33	-	(9)	-	24
운반건설기계및차량	187	-	(47)	-	140
전기통신기기	46	4	(10)	-	40
기타일반유형자산	255	-	-	21	276
	59,071	77	(1,337)	9,161	66,97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기 초	취 득	상 각	기타증감	기 말
토 지	18,569	-	-	-	18,569
건 물	40,296	-	(1,151)	-	39,145
구 축 물	482	-	(30)	-	452
사무용기기	444	38	(96)	(2)	384
사무용집기	39	3	(9)	-	33
운반건설기계및차량	212	21	(46)	-	187
전기통신기기	56	1	(11)	-	46
기타일반유형자산	-	-	-	255	255
	60,098	63	(1,343)	253	59,071

(*) 당기말 자산재평가로 인한 증감으로, 토지재평가손실환입 34백만원 및 토지재평가이익 8,449백만원, 건물 재평가이익 640백만원, 구축물 재평가이익 17백만원, 기타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실 30백만원 및 기타일반유형자산 재평가이익 51백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8. 차입금

(1) 2021년과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21.12.31	2021	20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한국은행	1.37 ~ 2.59	2,299,500	2,299,500
(차감: 1년이내상환일도래분)			(105,500)	(237,000)
			2,194,000	2,062,500

(2) 당기말 현재 기금의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상환연도	금 액
2022 년	105,500
2023 년	430,000
2024 년	520,000
2025 년	455,400
2026 년	3,000
2027 년 이후	785,600
	2,299,500

9. 프로그램순원가

(1)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총원가를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통일정책	남북사회 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합 계
업무대행수수료	220	242	281	1,457	2,200
기타용역비	-	-	15	12	27
기타민간보조비	3,045	3,424	3,989	18,136	28,594
융자보조비용	-	-	-	8,801	8,801
감가상각비	1,336	-	-	-	1,336
외화평가손실	-	-	-	12	12
대손상각비	-	-	-	3	3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30	-	-	-	30
	4,631	3,666	4,285	28,421	41,003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통일정책	남북사회 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합 계
업무대행수수료	165	216	769	1,100	2,250
기타용역비	2	2	8	12	24
기타민간보조비	3,173	4,249	15,110	18,625	41,157
융자보조비용	-	-	-	21,881	21,881
감가상각비	1,343	-	-	-	1,343
외화평가손실	-	-	-	68,788	68,788
	4,683	4,467	15,887	110,406	135,443

(2)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계상되어 있는 프로그램 총수익을 발생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통일정책	남북사회 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합 계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	-	-	9,491	9,491
보험수익	-	-	-	77	77
대손충당금환입	-	-	-	2,268	2,268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	-	-	147	147
잡이익	-	134	146	1,798	2,078
외화평가이익	-	-	-	96,086	96,086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	34	-	-	-	34
	34	134	146	109,867	110,18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통일정책	남북사회 문화교류	인도적 문제해결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합 계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	-	-	-	8,429	8,429
보험수익	-	-	-	68	68
대손충당금환입	-	-	-	66	66
융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	-	-	-	18,411	18,411
잡이익	-	317	18,223	893	19,433
외화평가이익	-	-	-	9	9
전기오류수정이익	255	-	-	-	255
	255	317	18,223	27,876	46,671

10. 기타비용 및 기타수익

(단위: 백만원)

구 분	계정과목	2021	2020
기타수익(비배분수익)	잡이익	7	8

11. 순자산조정

당기와 전기 중 기금의 순자산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0			
	당기초	증가	감소	당기말	전기초	증가	감소	전기말
투자증권평가손익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120	-	(120)	-	28	120	(28)	120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77	59	(691)	(555)	82	132	(137)	77
소 계	197	59	(811)	(555)	110	252	(165)	197
자산재평가손익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손익	8,132	9,157	-	17,289	8,132	-	-	8,132
총 계	8,329	9,216	(811)	16,734	8,242	252	(165)	8,329

12.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기금은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에게 북한 당국의 몰수, 사업중단 등 경영외적 사유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계약을 개성공단 투자기업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 류	회 사 명	계약확정금액	계약미확정금액
경제협력사업보험	㈜진성산업 등 2개 업체	1,418	3,611

(2)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4조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2010년「5.24조치」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투자중단으로 인해 기금은 2011년 3월 18일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7개 업체에 4,99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4월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기금은 2013년 8월 7일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59개 업체에 176,098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제 2차 남북공동위원회의 합의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됨에 따라 기금은 경제협력 사업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에 의거 보험금 수령업체에게 보험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2021년 12월 31일 현재 130,846백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기금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미회수한 보험금을 포함한 50,242백만원을 기타의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전액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은 경협보험 약관 및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보험금 미반납 업체의 개성공업지구내 재산에 대한 대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